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6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농산물 시장개방 및 경쟁의 가속화로 지역농업의 새로운 활로개척을 위한 첨단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 농업분야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바이오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농업·농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바이오농업·농기업의 육성목표와 전략, 기본방향, 중·장기 추진계획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3조)
- 바이오농업·농기업에 대한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충북 고유 브랜드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4조)
- 충청북도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 ~ 제10조)

○ 바이오농업의 육성·발전과 관련하여 발명·연구·개발·응용 등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및 해외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의안전문 :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바이오농업·농기업을 육성 및 발전시켜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이오농업"이라 함은 전통 및 첨단 바이오기술을 접목하여 농업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을 말한다.
2. "바이오농기업"이라 함은 전통 및 첨단 바이오기술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기업 및 바이오농업과 관련된 농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충청북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바이오농업·농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바이오농업·농기업의 육성목표와 전략
2. 바이오농업·농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3. 바이오농업·농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4. 종합적·체계적 육성 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농업·농기업에 대한 관련 정책개발·연구
2. 바이오농업·농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보급
3. 바이오농업·농기업의 충북 고유 브랜드 개발
4. 바이오농업관련 생물자원의 발굴, 개발 및 산업화
5. 바이오농업관련 세미나, 교류협력, 홍보, 연수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바이오농업·농기업을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당연직 위원은 농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바이오농업 관련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역바이오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2. 바이오농업인 대상 수상자 선정
3. 바이오농업 육성과 관련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정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도지사는 바이오농업의 육성·발전과 관련하여 발명·연구·개발·응용 등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해외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자문,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벤처농업등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분야의 첨단 과학기술 및 영농·경영기법의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보급하며,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농업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3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